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김예지
이상휘 · 김용태 · 김승수
김정재 · 김성원 · 김위상
윤상현 · 김상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를 감면하고,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,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

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
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
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의3 신설 등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1조의3(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

- 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인구감소지역기업”이라 한다)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(인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는 때에는 전입일)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인구감소지역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·분할·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감면기간 중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.
- ③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,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-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.
-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.

1. 2. (생략)

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(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
③ 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2028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71조의3(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인구감소지역기업”이라 한다)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(인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는 때에는 전입일)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인

구감소지역기업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·분할·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감면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.

③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,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

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
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.

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